

제24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2023. 9. 18.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213호로 2023년 9월 6일 이규선 의원 외 5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9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 가. 현 조례는 자치경찰제 시행에 대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날로 증가하는 치안 수요에 대응하여 범죄로부터 지역사회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활동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3년 5월 13일 제정되었음.
- 나. 하지만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시행되는 내용이 없어 사문화된 상태이고, 최근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 범죄 등이 도심에서 발생하면서 고조되고 있는 지역 치안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다. 이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에 대한 충실하고 실효적인 자치법규 정비의 일환으로 현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조항 중 “자치경찰제 시행”에 관한 내용을 삭제(안 제1조)
- 나. 정의조항 중 불필요한 사항 삭제 및 정비(안 제2조)
- 다. 범죄예방 및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의 근거 마련(안 제4조)
- 라. 주민안전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삭제(현행 제5조 ~ 제7조 및 제9조)
- 마. 준용조항을 삭제(현행 제10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다. 입법예고(2023. 9. 4. ~ 9. 8.)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정 이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시행되는 내용이 없어
사문화된 조례를 정비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에서 본 조례의 목적이 지역실정에 맞는 치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민안전을 위한 각종 활동 등의 지원에 있음을 명시함. 현행 조례는 자치경찰제 시행에 대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치안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2021년 도입된 자치경찰 사무가 시·도 소관사무로 분류됨에 따라 목적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한 것임.

- 안 제2조(정의)는 현행 조례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거나 설명이 필요하지 않는 용어인 “범죄행위”, “방법 취약계층”, “단체”, “사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주민안전”에 관한 정의를 정비함.
- 안 제4조(협력체계의 구축)는 범죄예방 및 사후대응을 위하여 경찰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현행 조례 제5조(주민안전지원센터의 설치 등) 및 제6조(지원센터의 기능), 제7조(지원센터의 운영), 제9조(보험가입)를 삭제함. 주민안전지원센터는 조례 제정 이후 설치된 바 없으며 그 기능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상의 치안협의회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상의 자율방범대의 기능과 중복되어 삭제한 것임.
- 현행 조례 제10조(준용)를 삭제함.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시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므로 불필요한 준용 규정을 삭제한 것임.

○ 검토 결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자치경찰제 시행에 대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치안시스템을 구축하고자 2013년 5월 제정된 조례로서, 주민안전 보호와 관련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및 주민안전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 조례안의 제정 당시부터 타 조례¹⁾와의 기능 중복 등을 이유로 관련부서 및 안전심사를 담당했던 일부 위원들로부터 반대가 있었던 조례임.
- 「경찰법」 전부개정(2021.1.1.)으로 도입된 자치경찰사무는 광역 자치단체인 시·도 소관사무에 해당하며, 현 조례가 제정된 이후 주민안전지원센터 설치 등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 실질적·구체적으로 시행된 적이 없는 실정임.
- 이에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실효적인 자치법규 정비의 일환으로서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됨.
- 다만, 현행 조례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미 우리 구에서 제정되어 시행 중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의 중복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자치경찰사무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에 해당함에 따라 지역치안에 관한 사항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할 수 밖에 없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안은 범죄예방 등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최근 무동기 범죄의 급증으로 인해 가중되는 주민의 불안감을 일부 경감하고자 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개정안이라 사료됨.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참 고 자 료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범질서 확립과 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영등포구 내 기관, 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좋은 영등포구를 만들기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설치) 지역사회 안전사고 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협의한다.

1. 범질서 확립 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대한 주민요구·건의사항
3.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간 지원 협조에 관한 사항
4. 기타 지역 내 범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주민 및 외국인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소재하는 자율방범대(외국인 자율방범대 포함)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임무) ①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08.>

1. 취약지역 범죠평방·순찰 및 범죠탈고
2. 청소년 선도 활동
3. 교통 및 기초 질서 계도
4.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5. 그 밖에 구민 보호를 위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 이

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개정 2018.11.08.>

② 외국인 자살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11.08.>

1. 외국인 밀집지역 및 취약지역 범죄예방·순찰
2.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
3.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관련 경찰 치안업무 및 구 행사 협조·지원
4. 그 밖에 외국인과 구민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